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9. 22 선고 2021가합41269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성

담당변호사 서연희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린

담당변호사 배현수

변 론 종 결 2022. 9. 8.

판 결 선 고 2022. 9.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 2018. 10. 30.부터 2020. 3. 3.까지 합계 262,949,940원의 채무변제를 취소한다1) .
피고는 원고에게 262,949,9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대여금 3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21. 7. 16.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C은 2020. 12. 18.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10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2008. 10. 16.경부터 2020. 2. 2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67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7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합244, 2020고합367(병합), 2020고합368(병합), 2020초기1135호], C이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2021. 5. 20. 그 항소가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21노73호),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C은 2018. 10. 30.부터 2020. 3. 3.경까지 피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한 후 피고에게 그 사용액 상당 금액을 변제하여 왔는바, 그 거래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고, 이를 정산하면 C이 피고에게 합계 264,004,840원을 변제한 셈이 된다(이하 ‘이 사건 변제행위’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30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 채권자인바, C이 별다른 재산도 없이 채무만 10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변제행위를 한 것은,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변제로서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변제행위의 취소를 구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해당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C으로부터, C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만큼을 지급받은 것으로, 위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국민카드 및 삼성카드 사용내역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② 피고가 당시 C이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존부 및 범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C이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변제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곽정한, 판사 정주현, 판사 박건협

별지

계좌이체내역 표

거래 일시	보내는 사람	금액
2018. 10. 30.	D회사	17,096,783
2018. 11. 30.	D회사	8,274,401
2018. 12. 4.	D회사	8,425,300
2018. 12. 27.	D회사	7,983,863
2018. 12. 28.	D회사	8,660,700
2018. 12. 31.	D회사	1,594,300
2019. 1. 25.	D회사	7,008,632
2019. 1. 28.	D회사	8,120,175
2019. 1. 28.	D회사	93,498
2019. 2. 28.	D회사	7,481,560
2019. 3. 4.	D회사	8,033,300
2019. 3. 28.	D회사	7,658,333
2019. 3. 29.	D회사	8,033,000
2019. 4. 19.	D회사	7,658,333
2019. 4. 23.	D회사	7,935,900
2019. 5. 10.	C	-295,900
2019. 6. 6.	D회사	7,766,200
2019. 6. 3.	D회사	7,631,900
2019. 6. 4.	C	-441,100
2019. 6. 29.	C	-317,900
2019. 7. 1.	D회사	7,373,315
2019. 7. 4.	D회사	7,108,500
2019. 7. 31.	D회사	7,381,774
2019. 7. 31.	D회사	7,703,000
2019. 8. 30.	D회사	7,887,674
2019. 8. 30.	D회사	7,745,800
2019. 10. 1.	D회사	5,333,332
2019. 10. 2.	D회사	5,268,800
2019. 10. 29.	D회사	7,506,402
2019. 11. 5.	D회사	7,473,600
2019. 12. 2.	D회사	14,891,300
2020. 1. 2.	D회사	9,300,464
2020. 1. 3.	D회사	10,072,500
2020. 1. 31.	D회사	7,590,200
2020. 1. 31.	D회사	7,506,402
2020. 3. 2.	C	7,288,299
2020. 3. 3.	C	7,117,300
합계	262,949,940원	

끝.

1) 원고는, 피고와 C 사이에 이루어진 별지 표 기재 거래내역에 해당하는 변제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이 판결문 1. 다.항 참조),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 그대로를 기재한다.